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70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의자 : 전용기 · 문진석 · 안태준

박선원 · 이건태 · 김용민

복기왕 · 김원이 · 김기표

김병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음.

그러나,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한 주차단위구획으로 되어 있어 주차단위구획을 이동하는 경우 강제 조치가 불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견인조치 또는 차량 보관소의 부재,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 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제30조제2항제1호).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제1항제6호 중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계속하여”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노외주차장”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계속하여”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제3호 중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계속하여”로 한다.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제6조의3”을 “제6조의3제1항”으로 한다.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p>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u>계속하여 고정적으로</u> 주차하는 경우</p> <p>② · ③ (생 략)</p> <p>제15조(관리방법)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 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1. ~ 3. (생 략)</p> <p>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u>노외주차장에</u>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u>계속하여 고정적으로</u> 주차하는 경우</p> <p>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 ② (생 략)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6. ----- ----- ----- <u>계속하여</u>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관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u>----- ----- <u>계속하여</u> ----- ---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 (현행과 같음)</p>
--	--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④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생 략)

2. ~ 6.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2. ~ 4. (생 략)

3.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부설주차장----- 계속하여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③ -----  
-----  
-----.

1. 제6조의3제1항-----  
-----  
-----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